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92

발의연월일: 2020. 6. 25.

발 의 자:아진비아이재정 • 주철현

윤준병 • 양이원영 • 남인순

윤영덕 · 김경만 · 이용호

이용빈 · 문진석 · 천준호

권인숙 · 김승원 의원

(1491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 시 임금 및 근로조건 등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.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서면 교부방식은 근로계약서의 분실 및 훼손의 가능성이 있어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한 법적 문제 발생 시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음.

한편,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전자 문서도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으며, 보관의 지속성 측면에서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 래 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으로도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편의를 높 이고자 함(안 제17조제2항 및 제67조제3항). 법률 제 호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 본문 중 "서면"을 "서면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)"으로 한다.

제67조제3항 중 "서면"을 "서면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 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)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근로조건의 명시) ① (생	제17조(근로조건의 명시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	2
련한 임금의 구성항목·계산방	
법·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	
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<u>서면</u>	<u>서면</u>
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	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
다. 다만, 본문에 따른 사항이	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
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	<u>서를 포함한다)</u>
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	
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	
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	
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	
제67조(근로계약) ①・② (생	제67조(근로계약) ①・② (현행과
략)	같음)
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	③
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	
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	
을 <u>서면</u> 으로 명시하여 교부하	- <u>서면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</u>
여야 한다.	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전

자문서를 포함한다)